
제20대 국회 입법과제

- '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 -

2016. 5

|| 목 차 ||

I . 건의 배경	1
II . 20대 국회 과제	6
1.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6
1)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인프라 정비	
2)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	
2. 인구 오퍼스(Onus)에 유연한 대응	11
3) 재정지출 구조개혁	
4) 복지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체계적 논의	
5)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3. 성장방식 Zero-Base 재검토	17
6) 내수-서비스업 기반 강화	
7) 핵심역량 강화 위한 사업재편 활성화	
4.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23
8) 벤처·중소기업 육성	
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패러다임 전환	
10)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활동 여건 조성	
5.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29
11) 입법의 적시성·신속성·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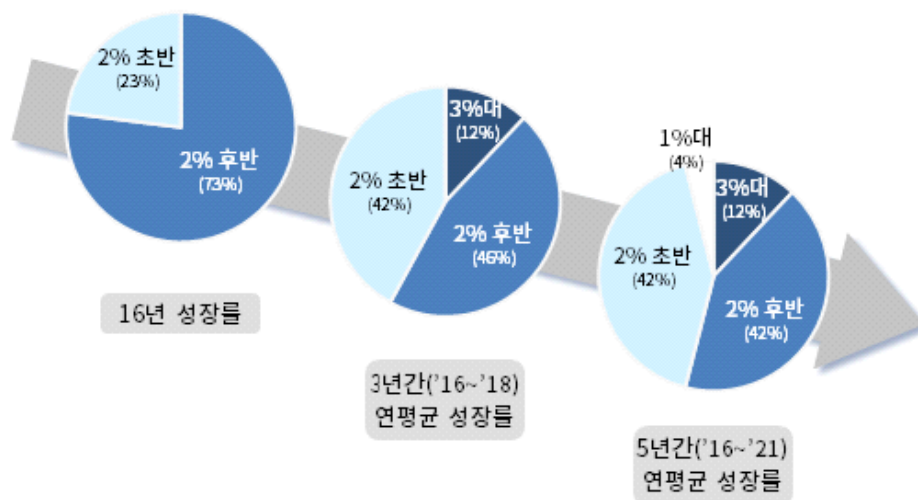
[첨부] 설문조사 결과 요약

I. 건의 배경

□ 20대 국회임기 중 우리나라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4만 달러 기반구축의 중요한 시기
 - 1인당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는 6개* → 우리나라는 7번째로 선진국 반열 진입 예상
 - * 일본('92), 미국('96), 독일('03), 프랑스('03), 영국('03), 이탈리아('04)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지연될 수 있고,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움

<그림1> 경제전문가, 향후 5년간 GDP 성장률 전망¹⁾



- 최근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도는 낮은 수준(현실과 인식의 Gap) → 사회통합 저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치상 개선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하락
 - 불평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높은 편(앳킨슨 지수, 33개국 중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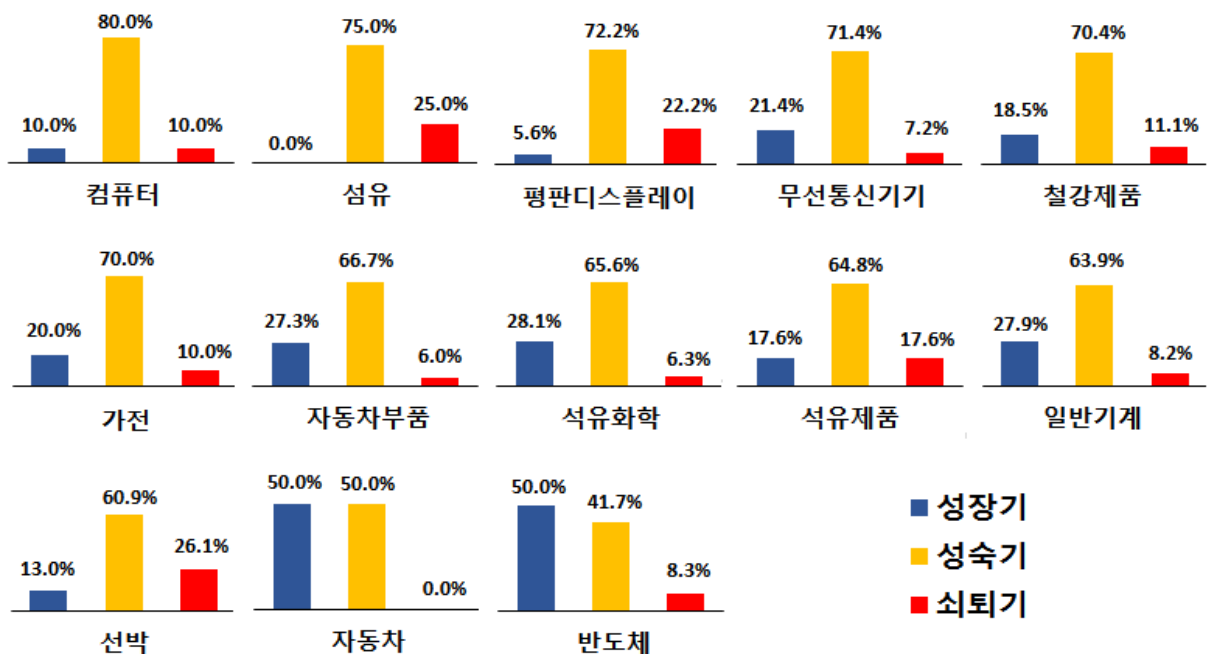
1)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2016)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인구 오너스(onus)시대 진입
 - 201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 예상(3,704만명 → 3,702만명)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
 - 2018년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전망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세대간 갈등 등

□ 대외리스크 증가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성장을 더욱 제약

-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불안 등 우리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리스크 상존 →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 파급 효과 크고, 동시다발적 발생시 정책자원 분산
- 대부분 주력산업이 Biz사이클상 성숙기 진입, 중국과 기술격차 축소

<그림2> 업종별 주력사업의 비즈니스사이클 현황²⁾



2)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 조사(2016)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도래와 중산층·노인인구 증가 등 글로벌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기회 예상
 -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수준, 교육적응력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적응도 순위에서 139개국 중 25위('16년, 다보스포럼).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법적안정성 등에서 낮은 평가

<표1> 역대 산업혁명 시기와 내용

1차 산업혁명 (1784년)	2차 산업혁명 (1870년)	3차 산업혁명 (1969년)	4차 산업혁명 (최근)
			
물증기 동력화	전기, 대량생산	전자,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 자료 : 다보스포럼(2016)

- 2020년 중국 1인당 GDP 1만 달러 진입,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하는 등 인접 교역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료기술, IT, 한류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 그러나 기회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가 위험요소화 될 수 있음

□ 20대 국회입기, 성장공식이 바뀌는 시기 ⇒ 지속성장 위해 선진화된 제도 뒷받침이 절실

- 지금까지의 성장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주로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을 얼마나 축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
 - 2015년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
 - 즉, 제한된 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가 성과를 좌우 →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가능

<표2>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³⁾

	실질GDP (①+②+③)	취업자수①	물적자본②	총요소생산성*③
2006~2010년	4.0	0.5	1.8	1.7
2011~2015년	3.1	1.0	1.3	0.8
2016~2020년	3.0	0.4	1.0	1.6
2021~2025년	2.5	0.1	1.0	1.4

*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

○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 막중

- 다가올 경제, 사회변화의 큰 물결 담아내고 우리경제가 50년, 100년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할 시기
- 단기성과 의식해 개혁 머뭇거리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제도 설계 →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과실 향유할 수 있게 해야

□ 대한상의는 경제계를 대표하여 20대 국회에 바라는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 첫째, 새로운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중국·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글로벌 중산층 증가’ 등은 우리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과 외국 소비층 국내 유입의 좋은 기회
- 서비스산업, 융합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함

3) KDI,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14)

○ 둘째, 인구 오너스 현상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소비, 복지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것. 생산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함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함

○ 셋째, 성장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수출 위주의 Single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움
- 제조업,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함

○ 넷째, 시장 기능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이 이뤄져야 함

-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산층이 두텁고 기회가 넓게 열린 사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 성과 내는 데는 한계.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해 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생태계를 복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다섯째,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가가 되어 주기를 희망

- 덩치보다 민첩성이 더 중요해 지는 시대. 슬로우 피시(Slow fish)와 패스트 피시(Fast fish)의 싸움에서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패스트 피시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
- 경제·사회환경의 급변화에 경제주체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입법지원이 적기에 이뤄지기기를 바람

II. 20대 국회 과제

1.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1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인프라 정비

필요성

-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성과 가시화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순위 지속상승
 - * 세계은행 기업환경 순위 : 8위('12)→ 7위('13)→ 5위('14)→ 4위('15)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신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부재
 - OECD, 한국의 상품시장·서비스분야 규제는 회원국내에서 높은 수준 → 효율적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저해 지적⁴⁾
 - * PMR(상품시장 규제지수)⁵⁾ OECD 4위, 서비스분야 규제가 제조업의 4배 수준 사전규제, 포지티브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낡은 규제프레임
 - 사전규제, 포지티브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낡은 규제프레임 개선 지연
 - 국회발의 법안이 정부발의 법안의 15배 이상 → 정부입법만 규제영향

4) OECD,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2016)

5)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시장 전반의 규제와 환경을 평가하여 지수화. 0~4점 척도 중 4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함. 2013년 한국은 1.88로 OECD회원국 중 4위

심사대상,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할 수 있는 장치 미비

<표3> 발의주체별 국회접수 법률안(제19대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위원장	정부	계
15,444	1,285	1,093	17,822

- 규제시스템 개선 없이 민간의 혁신 자극하는데 한계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거의 모든 혁신에는 우연적이거나 무작위적인 요소가 있음⁶⁾ →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입법과제

-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조속 마련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 시·도별 2개(세종 1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 도입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	

6) 에드먼드 펄프스, 대변영의 조건(2016)

○ 기업제안 방식의 규제특례제도 확대 적용 통해 신산업 기회 창출

기업제안 방식의 규제특례 제도

- 》 기업이 규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안전성 확보)을 마련하는 경우 정부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 》 현재 '기업활력제고법'에 한해 도입 → 신산업 진출기업에 대해 확대 적용할 필요

○ 규제프레임 원칙의 대전환을 통해 기업가정신 제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기술발전 및 융합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규제비용총량제 등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제 확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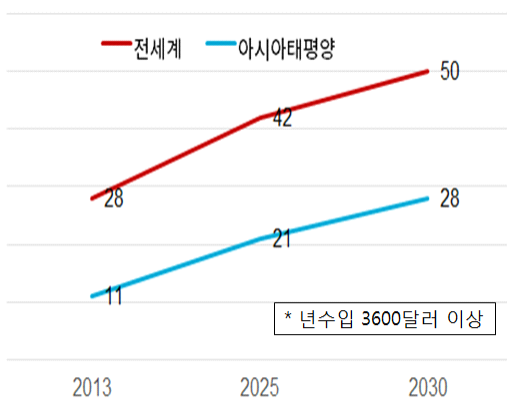
국회법 개정

- 》 (현재) 정부입법만 규제영향평가 → (개정) 모든 법으로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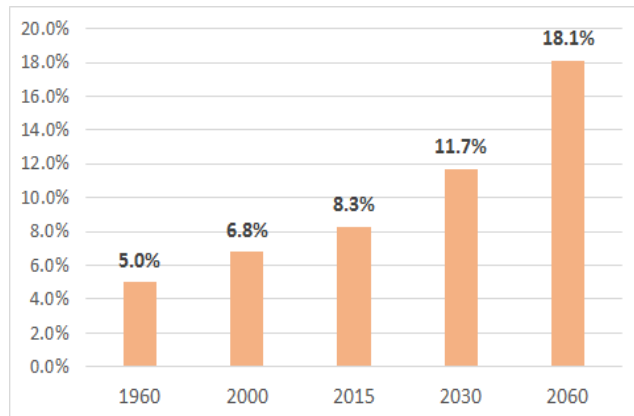
-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산층 팽창, 선진국의 고령화 진전으로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큰 변화 예상

<그림3> 글로벌 중산층* 증가(단위: 억명)



* 자료 : 맥킨지글로벌연구소

<그림4>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전망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이들 소비층을 공략할 제품,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 의료산업은 우수한 의료진, IT 인프라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후방산업의 발전도 견인하는 효과가 크지만, 갈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체

입법과제

-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병원간 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계 애로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외국인 숙박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적용

* 2010년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폐지되고 부가세 환급 제도가 시행됐으나, 복잡한 절차와 관리부담으로 활용이 저조. 부가세 환급제도마저도 2015년 일몰

○ 문화컨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음악·웹툰 등 콘텐츠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현행 2~25%→ 30%) 등

2. 인구 오퍼스(Onus)에 유연한 대응

3 재정지출 구조개혁

필요성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리스크 상존

* 2016년 국가채무 전망(% GDP 대비, 기획재정부)

: 일본 232.4, 이탈리아 159.9, 프랑스 121.3, OECD 평균 115.4, 미국 111.4, **한국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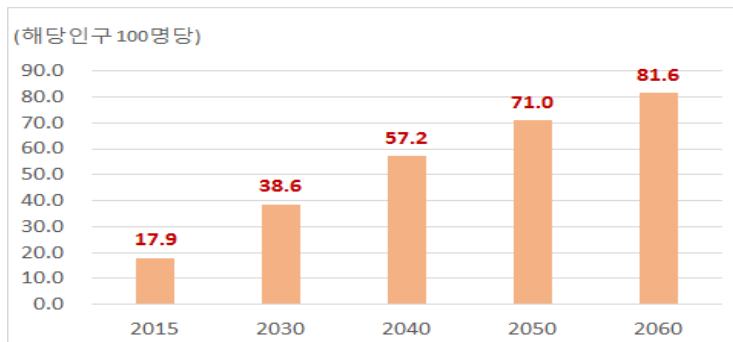
- 세출 구조조정 없이 현재 지출구조가 지속되거나 재원조달 방안 없는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기획재정부, '15년 12월)

-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 시 62.4%
- 재원 조달방안 없이 신규 의무지출('20년에 10조원 규모) 도입시 88.8%

- 중장기 재정위기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복지정책 수립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논의 필요

<그림5> 노년부양비 추계



* 자료 : 통계청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
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

입법과제

-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출 규율 강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예: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 *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 채무한도 설정
 - * 지출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 총지출 증가율 설정
- 》 Pay-Go 제도(재정수반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

- 국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정책 수립 방지

국회법 개정

- 》 [목적] 복지정책 수립 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권익 대변
- 》 [해외사례] 핀란드,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헝가리 등이 의회 내에 미래세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의 의원들은 법안 발의시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법안을 평가⁷⁾

7) 한국행정연구원 ‘세대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연구보고서(2013년)

필요성

-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법인세율 인상 주장 제기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복지재원 조달 방식으로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선호

<표4> 복지지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여론 조사

다른 분야 지출 삭감	국채 발행	세금 인상
80.6%	9.9%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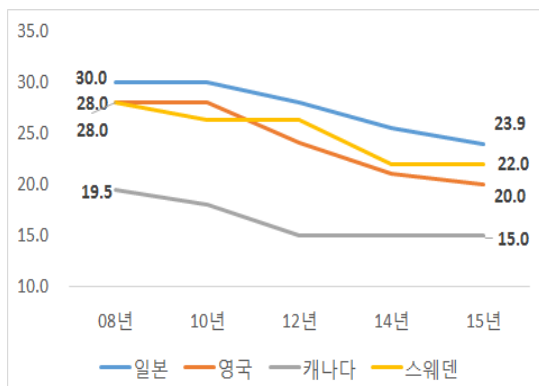
* 조사기관: 한국갤럽(2015)

- 주요국의 경우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경제성장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만큼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낮추는 추세

* OECD국가 법인세율 변동('08년~'14년) : 인하(16개) > 유지(12개) > 인상(6개).
인상 국가는 칠레,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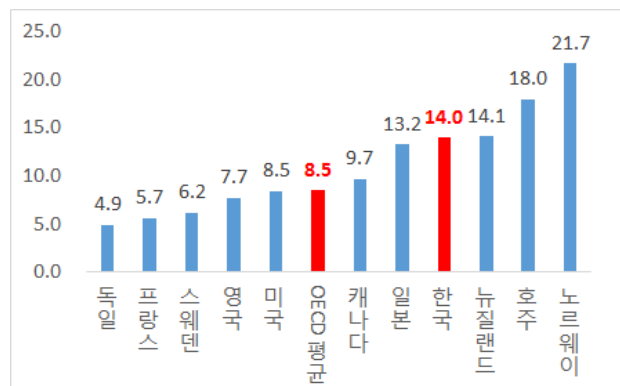
- '13년 기준 우리나라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14.0%)은 OECD 평균(8.5%)의 1.6배에 달하며,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6> 주요국의 법인세율(%)



* 자료 : OECD

<그림7>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



* 자료 : OECD(2013년 기준)

입법과제

- 경기하방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 지양
- 증세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증세에 대한 체계적 논의·공론화 필요

증세 논의에 대한 체계적 접근

- 》 [1단계] 구조개혁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 [2단계] 증세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전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 논의
→ 조세구조 분석, 국제비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 》 [3단계] 각 세목별 증세방법(비과세·감면 정비, 세율 인상 등) 논의

- 기업(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를 통해 중복 세무조사 부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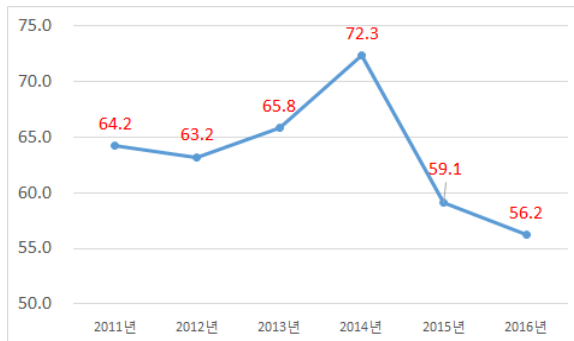
지방세기본법·방세법 개정

- 》 국세(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현재) 국세청·지방자치단체 → (개정) 국세청
- 》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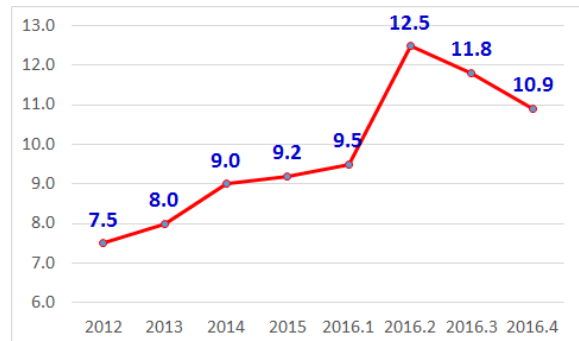
-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60세 정년연장제 시행('16년 대기업 및 공공기관, '17년 모든 기업)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청년 실업난 심화

<그림8> 기업 신규채용계획 추이(%)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림9> 청년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연공형 임금·인사체계,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된 제도와 관행이 청년 고용절벽,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
 -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을 개정할 필요
- 노동시장 유연성 미흡은 신산업 적응도를 떨어뜨림

입법과제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현재) 통상임금 정의규정 없음 → (개정) 정의규정 신설(정기적·일률적 지급 약정한 금품. 제외금품은 시행령에 명시)

》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주당 68시간 → 52시간)

기업규모별 단계별 시행, 노사합의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파견법 개정

》 구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규제 제외

고용보험법 개정

》 실업급여 인상 :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 지급기간 확대 : 90~240일 → 120~270일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

산재보험법 개정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단계적 도입('17년: 도보/대중교통, '20년: 자동차)

기간제법 개정

》 기간제법 :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4년)

- 청년고용할당제 등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도 도입에는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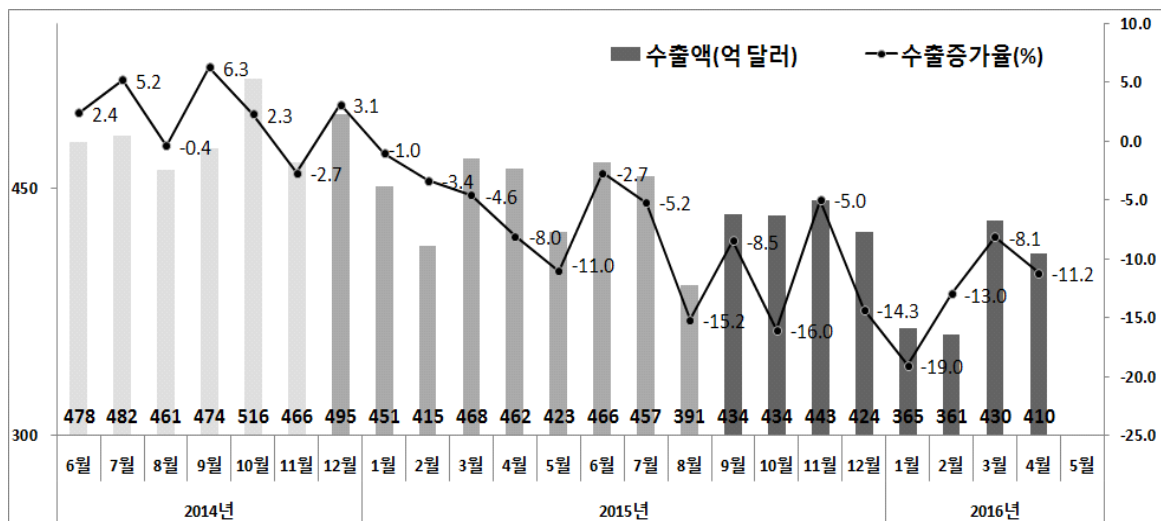
3. 성장 방식 Zero-Base 재검토

6 내수-서비스업 기반 강화

필요성

- 세계수요 부진, 중국기업 추격 등으로 '수출 주도-제조업 위주'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

<그림10>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율 추이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성장 정점에 근접한 제조업에 비하여 사회복지, IT,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은 발전여지가 많고 고용창출효과도 크나,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 기여율이 낮고 경쟁력도 뒤떨어짐

* 국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59.4%(14년))은 G7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 70% 내외에 비해 낮음(현대경제연구원)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13년, 한국생산성본부)

: 프랑스 79.8%, 미국 76.3%, 영국 76.2%, 독일 71.6%, 일본 70.2%, **한국 42.7%**

입법과제

○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자금·세제 등 지원근거 마련
-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및 ICT 활용 촉진

○ ICT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획기적 제고

은행법 개정

-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4% → 50%)

* 맥킨지는 핀테크 활성화로 2025년이 되면 기존 은행들은 수익의 60%, 매출의 40%까지 잠식될 것으로 분석. 인터넷 전문은행은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아직 출범하지 못함

○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요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적용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현재) 제조업은 세부업종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종은 일부 또는 전부 배제

(개정) 서비스업종도 원칙적으로 세부업종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
되,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인세법 개정

》 중소기업 우대 제도* 적용 서비스업종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배제, 접대비 한도
상향,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등

○ 신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산업 R&D·시설투자) 신산업 R&D 세액공제(30%), 신산업 시설투
자 세액공제(10%) 도입 등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
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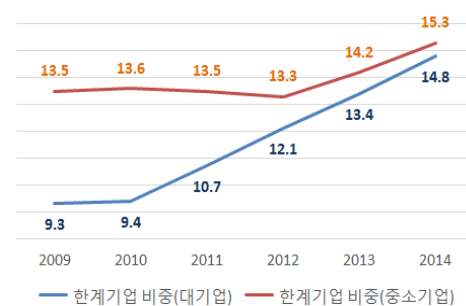
-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산업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선진국과의 개발경쟁에서 낙오될 우려

<표5>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구분	'04년	'07년	'11년	'15년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0.0	81.3	81.9	80.8
세계 최고 기술수준 기업 비율	12.8	13.8	14.7	9.5
對중국 기술격차(년)	4.0	3.8	3.7	3.3

* 자료 : 산업연구원

<그림11> 한계기업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선점하기 위해서는 M&A, 자산매각 등을 통한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표6>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

법률명	적용대상	특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과잉공급분야 기업 (기축법·통합도산법 대상 제외)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실(징후)기업 (신용등급 C)	채권단 주도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통합도산법	부실기업 (신용등급 C·D)	법원 주도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중소기업 (상장법인 제외)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업종전환·업종추가만 지원)

입법과제

- 과잉투자 재편, 효율적 자원 배분,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 인프라 구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

》 법 적용대상 확대

(현재)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

(개정) 과잉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법원조직법 개정

》 도산전문법원 설립

(현재) 국내 전문법원으로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만 설치

(개정) 파산법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산전문법원 설치

통합도산법 개정

》 자동적 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현재)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

(개정)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과 효력일간 시차로 인한 강제집행 발생 위험을 제거하고 절차비용 감소를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 중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현재) 업종전환, 업종추가의 경우만 지원

(개정) 기존 주력사업 강화 등 업종 內 구조조정도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등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 감면
- 》 기업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85% → (개정) 1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캠코로부터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캠코에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납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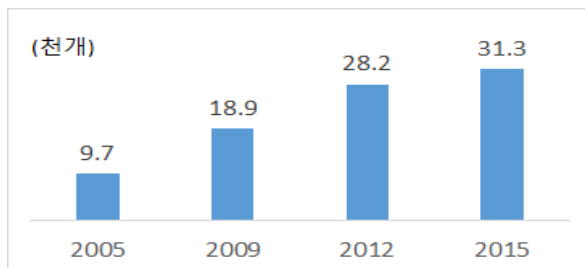
4.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중산층 확대

8 벤처·중소기업 육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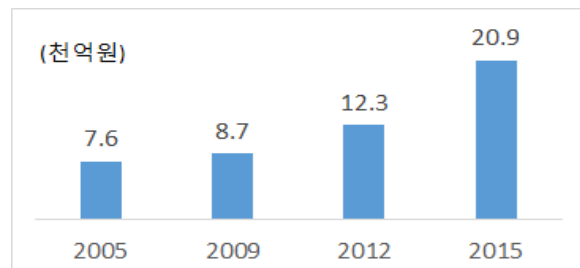
- 지난해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규모도 2조원을 넘어섰으나, 아직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지 못함

<그림12> 벤처기업 수



* 자료 : 벤처기업협회

<그림13> 벤처투자 규모



*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 중소기업의 국내경제 비중은 크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부족
 -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9%('14년, 중기청)
 - *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중소기업청)
 - : 네덜란드 10%, 독일 11%, 미국 4%, 한국 2.6%
 - *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60개국 중 55위('14년, IMD)

입법과제

○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엔젤투자자·클라우드펀딩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 10% → (개정) 20%
- 》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연기금, 공제회 등) 등에 한해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개정)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적용
- 》 중소기업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현재) 6% → (개정) 10%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등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

-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을 통해 1만개 신규 수출 중소·중견 기업 양성

필요성

- 2005년부터 동반성장정책이 시행 중이나,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에 중점

* 협력사 시혜성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등

- 뉴노멀 시대를 맞아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

* 기업의 95%가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인식(대한상의 조사, '16.3월)

<그림14>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⁸⁾

	동반성장 1.0	동반성장 2.0	동반성장 3.0
시 기	2005년~2010년	2010년~현재	미래
모델명	중소기업 지원형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거래관행개선형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형
특 징	▪ 대기업 협력사 시혜성 지원 ▪ 대기업-1차협력사중심 ▪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대기업 협력사지원 확대 ▪ 2·3차 협력사로 확산 ▪ 중소기업 보호·대기업 거래관행개선 강화	▪ 공동가치창출활동 강화 ▪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참여 확산 ▪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방식	정부 주도	정부·민간 공동	민간 주도

입법과제

- 대·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제도 기반 조성

8)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조사(2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16년말 일몰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기간 연장
- 》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진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 출연시 세액공제
(개정) 해외동반진출 지원 목적 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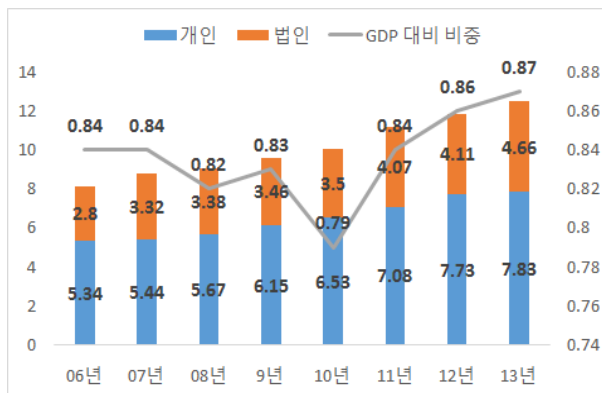
상생협력법 개정

- 》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수익계약 가능한 공공기관 범위 확대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개선) 기타공공기관 추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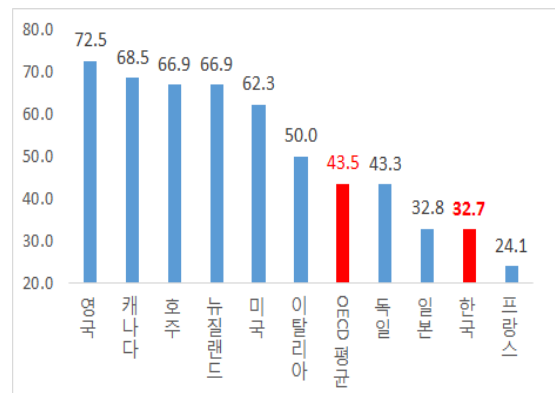
- 규제 성격의 양극화 완화 정책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 민간 경제주체가 공익단체 기부 등 사회공헌(나눔)을 통해 양극화 완화 및 복지재원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
- 기부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그림15> 국내 기부 총액 및 GDP 비중(조원, %)



* 자료: 보건복지부

<그림16> OECD 주요국 기부참여율(%)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주식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기본재산(출연금) 사용 제한 등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

<표7> 상속·증여세 비과세 주식출연 한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지분율 상한	5~10%	20~35%	5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법과제

○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 》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현재) 15~30% → (개정) 20~40%
- 》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현재) 소득금액의 10% → (개정) 20~30%
- 》 법인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현재) 5년 → (개정) 10년

나눔기본법 제정

- 》 기부연금제도* 도입
 -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기부제도
- 》 관련 기념일 지정, 행사 통해 기부문화 확산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 의결권 제한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투명공익법인)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 상향조정
(현재) 5~10% → (개정) 3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재산(출연금) 사용 재량 확대
 - * 최근 법 개정으로 2016년 말부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익법인의 재량이 미흡
 - * 기본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요함. 다만 투자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3년에 1회, 원금의 10%까지 공익사업에 사용 가능

5.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11 입법의 적시성·신속성·효율성 제고

필요성

- 사회 변화속도 가속화, 국회제출 법안 증가로 국회의 법·제도 변화가 적기를 놓치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사례 증가

<표8> 역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접수		2,507	7,489	13,913	17,822
처리	법률 반영*	1,578	3,773	6,178	7,429
	법률 미반영**	929	3,716	7,735	10,392
미처리		-	-	-	1

* 법률 반영 : 본회의 가결법안, 위원회 대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

** 법률 미반영 : 부결, 폐기, 철회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안

-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기업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시민사회도 변화해야 함을 강조

“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eat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

— klaus schwab

입법과제

- 국가간·기업간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입법의 적시성·신속성·효율성 제고 노력

국회법 개정

》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 *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해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제도

》 의사일정 요일제*

- * 국회 운영 날짜를 여야 협상을 통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자동적으로 개최되도록 하는 방안. 예를 들어 월·화·수요일엔 상임위원회, 목요일엔 본회의를 여는 방식

- 정부, 국회, 기업의 팀플레이가 중요

- 기업은 능동적으로 혁신 추구, 정부는 규제틀을 바꾸어 혁신 뒷받침, 국회는 입법을 통해 혁신 완성하는 선순환 고리 형성

[첨부] 설문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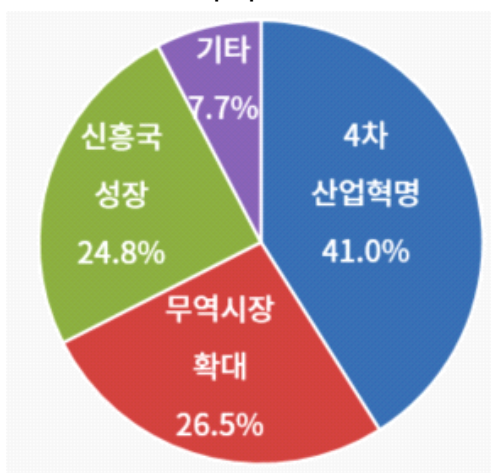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4/18(월)~4/29(금)
- 조사대상 : 전국상의 회장단, 서울상의 부회장단, 위원회 위원장단,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등 120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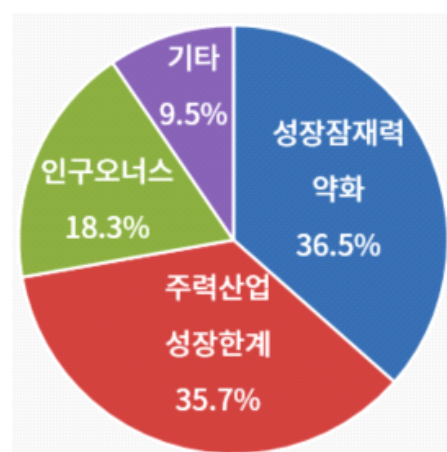
□ 우리 경제는 장기형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기회로, 성장잠재력 약화를 위협으로 꼽음

- 응답자의 93.4%가 우리경제상황이 장기형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 <‘일시적 경기둔화’ 3.3%, ‘느리지만 서서히 회복중인 상황’ 3.3%>
- 기회 요소로는 제4차 산업혁명(41.0%), FTA 등 무역시장 확대(26.5%), 신흥국 소비시장 성장(24.8%)을 꼽음 <기타 (7.7%)>
- 위협 요소로는 성장잠재력 약화(36.5%), 주력산업 성장한계(35.7%),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18.3%) 등을 꼽음 <기타 (9.5%)>

<기회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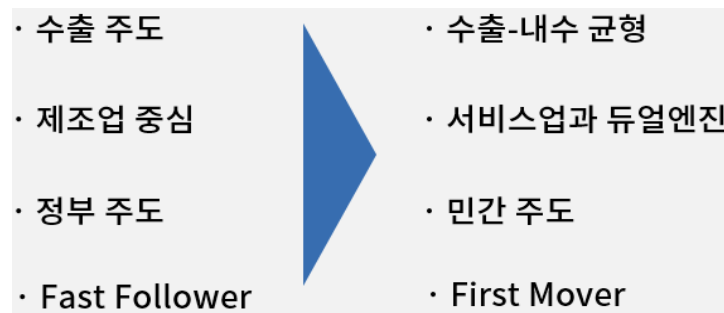
<위협 요소>



□ 現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 필요한 상황

- 응답자의 78.8%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 하고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함 <‘일부 바꾸어야 한다’ 21.2%>
- 현재의 성장 정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

<성장 방식 변화>



□ 법·제도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

- 우리나라의 법·제도 경쟁력은 산업·기업 경쟁력의 58% 수준이라 답함
* 한국의 제도경쟁력 순위('15, 세계경제포럼(WEF)) : 140개 국가 중 67위
- 법·제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효율적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53.8%)는 응답이 가장 많음. 그 뒤로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필요(35.3%), 소통협력 강화(10.9%)를 꼽음

□ 20대 국회의 중요 경제 키워드는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가 될 것

- 20대 국회의 중요 경제 키워드는 ‘신성장동력 육성’(57.7%), ‘일자리 창출’(27.8%), ‘경제민주화’(11.3%), 기타(3.2%) 순으로 응답

<경제 키워드로 꼽은 이유>

신성장동력 육성

- 주력산업의 한계 및 성장잠재력 약화 대처
- IoT·바이오 분야 등 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불안정 야기
-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가 성장과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

경제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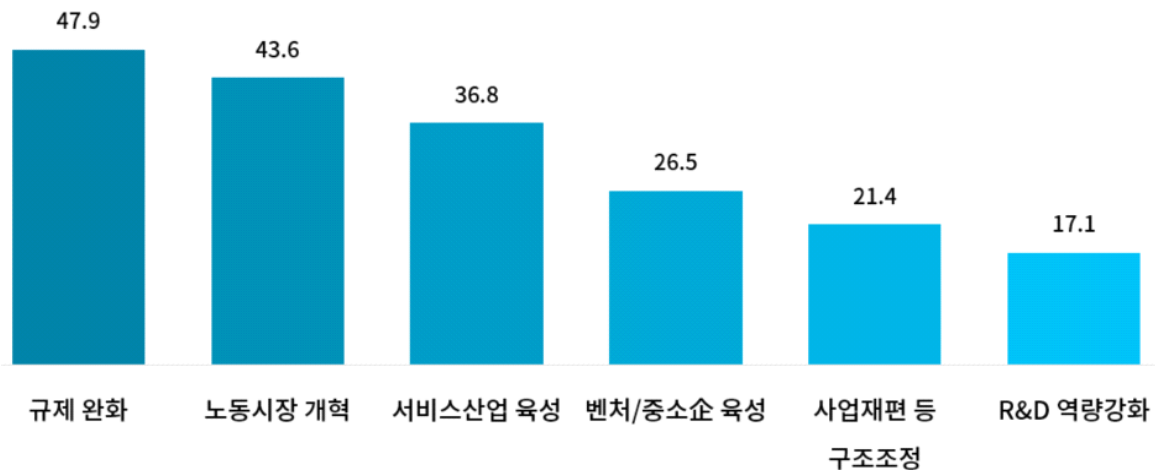
-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
- 개혁입법 후퇴, 포퓰리즘 경쟁(rat race)으로 번질까 우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과제는 ‘규제완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과제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47.9%)를 꼽음. 뒤를 이어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벤처/중소기업 육성’(26.5%),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21.4%), ‘R&D 역량강화’(17.1%) 順 <복수응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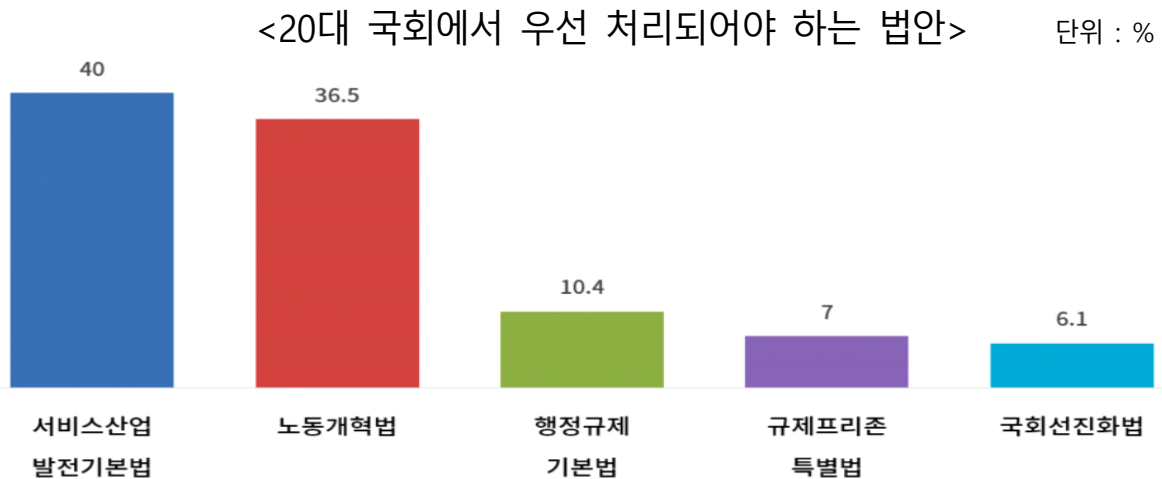
단위 : %



-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인상 부적절’(49.6%)이라는 의견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법인세외 다른 세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43.6%) 의견이 대다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불가피’(6.8%)>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요구

-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되어야 할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40.0%)을 가장 많이 꼽았음. 그 뒤를 이어 ‘노동개혁법’(36.5%), ‘행정규제기본법’(10.4%), ‘규제프리존특별법’(7.0%), 국회선진화법(6.1%) 순으로 나타남



□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며 소통·협력 능력 중요할 것

-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성적은 “B”(44.6%)로 새로 출범하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
- 기대 분야로는 ‘경제활성화’(47.4%)로 꼽음 <‘사회통합’ 22.8%, ‘정치선진화’ 19.3%, ‘민생안정’ 10.5%>
- 20대 국회에 필요한 덕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응답자 다수가 ‘소통·협력’(75.6%)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 전문성’(16.0%), ‘도덕성·청렴성’ 5.0%, 기타(3.4%)>

